

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

(김광성 의원)

의안 번호	25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4월 12일

발 의 자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 이은미, 이창열, 박춘희의원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우리군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으로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관련)
- 나. 추진방향 등 매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 수립 내용(안 제4조관련)
- 다.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(안 제5조 ~ 제6조관련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첨부)
- 다. 입법예고 : 2024. 1. 24. ~ 2024. 2. 13.(20일간)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 의견수렴 : 2024. 1. 10.~ 2024. 1. 17. 아래표 참조.

조례안에 대한 의견(인재육성과)	의회 의견
<p>○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할 시 예산이 수반되어, 군 집행부 검토 필요</p> <p>○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</p> <p>○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예산 반영 및 물품 지원 절차·방법(현물 또는 카드 등)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시일 소요</p> <p>예) 도내 시행 지자체 : 2개소</p>	<p>○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규정이 있고, 같은 법 시행령에는 관련 절차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.</p> <p>○ 상기내용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‘사전승인’이 아닌 지자체 장을 주체로 한 ‘예산 집행 전 협의’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</u> 2.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과 관련 지침서인 보건복지부 발간 ‘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협의 운용지침’(p.11)을 보면, <u>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협의 제외 대상이라 규정 되어 있음</u> <p>다만,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사항이 남아있는 만큼, 조례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원만한 처리 협의를 필요할 것으로 판단.</p> <p>참고) 사회보장 협의관련 자치법규 전문서적 구문 인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「자치법규 길라잡이」 p.131 - 최민수·윤진훈 지음-</p> <p>‘사회보장 관련 조례 제·개정 시에 언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.</p> <p><u>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 의원발의 조례안은 의회의결 후 집행기관에 이송하면 이 단계에서 단체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</u></p> </div>

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보건위생물품”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 및 방법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)된 증표를 교부 할 수 있다.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,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선정,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
3.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

4.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 또는 중단할 수 있다.

제6조(환수조치) 군수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법령】

청소년복지 지원법

제5조(건강한 성장지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,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,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12. 20.>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·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.<개정 2016. 12. 20.>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.<신설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 -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, 제2항에 따른 건강·체력 기준의 설정·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·범위, 방법,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 12. 12., 2021. 4. 20.>
- [제목개정 2017. 12. 12.]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

제3조의2(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.<개정 2022. 4. 19.>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및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[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]을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22. 4. 19.>
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<개정 2022. 4. 19.>
-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해야 한다.<개정 2019. 3. 19., 2022. 4. 19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8. 6. 5.] [제목개정 2022. 4. 19.]

비용추계서 (제5조제2항제5호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신규사업 추진
- 나. 관련조문
 - 조례안 제3조(지원대상 및 방법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제3조 1항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“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”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.
- ‘평창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’ 신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므로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야 함.

나. 추계 결과

- ‘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의 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 지침과 동일한 1인당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(1명) : 월13,000원, 연 156,000원 지원 기준
- 평창군 소재 11세 이상 18세이하 여성청소년 : 985명(2023. 12. 31기준)
 - 대상 인원 : 923명(생리용품지원 국비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인원 62명 제외)
 - 용품지원비용 : 923명 × 156,000원 = 143,988,000원
 - 프로그램구축 : 20,000,000원 1식 = 20,000,000원
 - 카드발급비용 : 923장 × 2,500원 = 2,307,500원
 - 합 계 : 166,295,500원

※ 생리용품 구입 전용 연계카드 프로그램구축 비용은 1차년도만 발생

※ 카드발급비용은 1차년도 923장, 2차년도부터는 신규 대상자 매년 약 200여장 카드발급 비용 발생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평창군 자체수입(군비) 166,296천 원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
연락처	(033) 330 - 202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					
지방세수입							
세 출		166,296	144,488	144,488	144,488	144,488	744,248
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지원 (301-14)		166,296	144,488	144,488	144,488	144,488	744,248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(국비)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	군비	166,296	144,488	144,488	144,488	144,488	744,248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